

濟州島研究 제13집(1996), pp. 53~95

합법적 도박의 사회적 영향: 제주지역 복권 구입자를 대상으로 *

김석준 · 강세현**

요 약

이 글은 복권을 중심으로 합법적 도박이 어떤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따져보고 있다. 이를 위해 도박의 정의와 복권의 도박적 성격, 도박 합법화의 논리와 한국 사회의 합법적 도박의 실제상, 도박 합법화를 둘러싼 논쟁 등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하여 가설을 도출하고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밟았다. 이 글에서 설정하고 있는 가설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1) 복권 구입 여부는 도박에 대한 허용적 태도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복권 구입 경험이 많을수록 다른 종류의 도박에 참여하는 정도도 높아질 것이다. (3) 복권 구입 경험이 많을수록 문제 도박 성향도 강화될 것이다.

연구 방법은 필자들이 지난 1995년 5월에 제주지역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도박의 실태와 의식에 관한 사항을 설문조사한 자료를 재분석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설문조사의 표집은 제주지역의 20세 이상 모든 성인 남녀를 모집단으로 하여 표집 지역의 인구 비율, 남자와 여자의 성비, 각 연령층의 인구 구성상의 비율을 고려하면서 비례적 충화집락표집법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한 설문지는 712부이다.

* 이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자료의 수집에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김석준·강세현(1996a)의 용역연구를 위해 1995년도에 연구비를 지원해준 것이 결정적인 도움이 됐다. 그리고 당시의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3학년 학생들은 면접원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이 글을 쓰는 기회를 빌어 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 김석준은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이며, 강세현은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강사이다.

결론적으로 세 개의 가설이 모두 검증됐고, 따라서 합법적 도박은 그러한 명제에 나타난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정내릴 수 있게 됐다. 그 판정이란 요컨대 합법적 도박의 도입과 확대는 일반인들의 도박에 대한 태도를 관용적으로 변모시키는 동시에 불법적이든 합법적이든 다른 도박에 대한 참여율도 높여놓고, 도박의 일상화를 초래하면서 사람들의 문제 도박 성향을 또한 강화시켜 그로 인한 각종의 사회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I. 서 론

1996년 7월 23일과 24일 이를 동안 제주도는 관광복권의 판촉을 위해 서울에서 이른바 거리쇼(Road Show)를 개최했다. “국내 최고의 당첨률을 자랑하는 관광복권과 함께 꿈과 행운을!”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연예인들과 도지사, 지역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등이 참여하여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한 것이다(제민일보, 1996. 7. 24일자).

이 관광복권은 1995년 1월 5일 개정된 제주도개발특별법에 근거하여 관광 진흥과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제주도가 1995년 7월부터 발행해 왔다. 위의 행사는 그 발행 첫 돌을 기념하는 동시에 부진한 판매율을 높이기 위한 공격적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제주도정, 1996. 6. 15일자).

이렇듯 한국 사회에서 복권은 경마, 카지노, 슬롯머신, 경륜 등과 더불어 제도화·합법화된 도박의 지위를 갖는다. 형법상의 범죄로 취급되고 사법기구의 통제 대상이 되는 다른 도박들과는 구분되어 복권을 비롯한 합법적 도박들은 공개된 장소에서 일부의 제약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즐길 수 있다.¹⁾

1) 일부의 제약 조건이란 예를 들어 카지노와 같이 외국인 전용으로 개설·운영 된다든지, 미성년자의 출입이나 참여가 제한된다든지 하는 조건들을 말한다. 그러나 복권의 경우 미성년자에게는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도 그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사실상 구입의 제약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동아일보, 1996. 4. 26일자).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도박은 또한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자주 지적된다. 도박이 일반인들의 놀이와 여가 활동의 하나로 인식되고 널리 퍼져있다는 사실은 물론이고, 도박으로 인해 저질러진 각종의 범죄나 그 사회적 폐해에 대한 보도가 끊임없이 이어져 충격을 주는 현실만 보아도 그렇다.²⁾ ‘도박병’, ‘도박 공화국’, ‘도박 종후군’과 같은 표현이 매스컴의 기사 제목으로 뽑혀 나오는 일은 그런 점에서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다(한국일보, 1992; 한겨례신문사, 1994; 김택환, 1995).

그렇다면, 도박이 이처럼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그 폐해에 대한 염려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켠에서 국가가 일부의 도박을 합법화하고 때에 따라서는 장려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러한 도박 합법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만일 합법화의 사회적 영향이 부정적인 것이라면, 그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보다도 합법화의 정책적 의의와 효과가 더 중요하고 기대할 만한 것인가?

이 글은 이러한 의문들을 풀어보기 위한 시도로 수행된다.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도박의 합법화는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껏 그 실태나 영향에 대한 토론이 진지하게 진행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김석준·강세현, 1996a: 47–53). 위의 의문에 접근해보려는 이 글의 시도는, 그러므로 도박 또는 합법적 도박에 대한 학술적 관심을唤起시키는 동시에 이를 체계적 토론의 장으로 이끌어낸다는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적과 의의를 위해 이 글은 우선 한국 사회에서 합법적 지위를 지닌 도박 중 복권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무엇보다 가용한 자료의 제한적 성격이 그 배경이기는 하지만³⁾, 우리가 복권에 일

2) 우리 사회에서 도박과 관련한 부패, 부정, 범죄의 사례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렇지만 이해를 돋기 위해 합법적 도박과 관련한 사건만을 몇 가지 예시하자면, 집권 여당과 정부의 고위직이 구속되기까지했던 1993년의 슬롯머신 뇌물사건(한겨례신문, 1996. 8. 31일자), 근래의 조직적 부정 경마 사건(한겨례신문, 1995. 1. 22일자)과 군의 엘리트 장교가 경마에서 돈을 잃고 저지른 은행 강도 사건(동아일보, 1995. 1. 11일자) 등을 들 수 있다.

차적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렇다. 첫째는 현재 국내의 합법적 도박 중 다른 것들과 비교해볼 때 복권은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가장 널리 판매망이 구축되어 있고, 이로 인해 둘째는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적은 돈으로도 그것을 구입하는 데 거의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에 대한 일반인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리라 예상되거나와 도박 합법화의 사회적 영향을 검증해보는 데는 이런 조건이 훨씬 적합하다 할 수 있다. 물론 복권에만 치중한다는 이 글의 방향이 연구될 범위와 도박 합법화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보다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하는 데는 나름대로 한계로 작용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상의 목적과 의의, 한계 속에서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내용과 구성을 통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도박의 개념과 도박 합법화의 배경 및 논리, 그리고 합법적 도박의 실제상을 복권에 초점을 맞추어 정리·검토한다.

둘째, 도박(복권)의 합법화가 파생시키는 다양한 사회적 영향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을 검토하면서 구체적인 분석 범위와 그 내용을 가설화하여 제시한다.

셋째, 제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된 자료를 분석하면서 위와 같이 제안된 가설적 명제를 검증함으로써 합법적 도박, 곧 복권이 어떤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해낸다.

이 글이 제주지역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까닭은 합법적 도박과 이 지역의 관계가 국내의 어떤 지역보다도 더 긴밀하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에 두 군데밖에 없는 경마장 중 하나가 제주에 있고, 전국 14개 소의 카지노 중 8개소가 제주에서 영업을 한다는 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로는 제주도만이 관광복권이라는 복권을 하나 더 발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⁴⁾ 그러므로 제주지역은 합법적 도박의

3) 이 글에서 분석한 설문조사 자료의 성격에 대해서는 뒤의 3장 1절을 참조할 것.

4) 합법적 도박과 제주지역의 관계에 대해서는 뒤의 2장 2절을 더 볼 것.

실험장이라 할 수 있거니와 그로 인한 사회적 영향의 점검도 다른 지역보다 우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Ⅱ. 도박(복권) 합법화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몇 가지 쟁점과 가설

1. 도박의 정의와 복권의 도박적 성격

넓은 의미로 도박을 흔히 우연의 놀이(games of chance)라 부른다(Cailllois, 1994). 그러나 여기서는 좁은 의미로 도박을 규정하려 한다. 곧, ‘도박을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의 결과에 기대어 금전과 가치있는 어떤 것의 이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활동(Devereux, Jr., 1974: 53)’이면서 ‘레크레이션의 하나로 간주되는 재정적 위험 부담 행위(Kallick – Kaufman and Reuter, 1979: 1–2)’로 규정한다. 이렇게 정의할 경우 도박은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 선물거래 등의 경제 활동과 공유하는 면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그와는 일정하게 구별되는 다음과 같은 측면이 도박에는 있다.

우선 그러한 경제활동에 비해 도박은 대체로 오락 또는 놀이의 한 형태로서 개인의 사적 영역에 편입되어 즐겨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물론 도박도 사회에 따라서는 합법화되어 기업 활동이나 경제 활동의 일부로 인정받기도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도박장을 개설하거나 도박을 위한 설비나 도구를 제작 또는 제공하는 행위자들에게만 경제 활동이지 도박장을 찾거나 도박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일반인들에게는 그 자체가 생계 유지를 위한 경제 활동이라기보다 놀이이자 유흥의 의미가 크다.

게다가 특정 사회의 문화나 국가 정책, 종교에 따라서는 도박이 일탈이나 범죄로 취급되기도 한다. 주식 투자와 같은 위의 경제 활동들은 적어도 자본주의 체제의 사회에서는 사업이자 기업 활동이며, 사업상의 규칙이나 법을 어기지 않는 한 사회적 비난과 통제 대

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도박 참여자에게는 그와는 다른 상황적·법적 정의가 부여될 수 있다. 주식 투자자에게는 투자의 규칙을 어기지 않는 한 아무리 많이 그리고 자주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도덕적 비난이 가해지기 어렵지만, 도박에 참여하는 일반인은 그가 비록 도박의 게임 규칙을 지키고 있다 하더라도 도박에 탐닉할 경우 그것만으로도 도덕적 비난이나 사회적 낙인 또는 더 나아가 임상적 치료나 법적 처벌의 대상으로 전화하기 쉽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논의하려는 도박과 그러한 경제 활동은 일단 구분지어 둘 필요가 있다.⁵⁾

한편 도박은 우연성에 의해 승패가 전적으로 좌우되는 것만은 아니다. 도박의 형태에 따라서는 참여자의 육체적·지적 능력이나 숙련된 기술을 상당 수준 요구하기도 한다. 당구, 축구, 경마, 경륜 등의 스포츠 경기나 화투, 카드, 장기, 바둑, 마작 등의 게임 상황에서 금전과 재물을 걸고 내기를 한다면 이 역시 도박이지만 여기에는 각기 다른 일정한 수준의 능력이나 기술이 필요하다.

하지만 복권에 의한 도박은 참여자의 기량이나 기술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복권은 거의 전적으로 우연적 결과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된다. 그런 점에서 복권은 전형적 도박이라 할 수 있겠고, 도박의 이념형(ideal type)에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사실상 이러한 복권의 성격이 그것을 구입하는 사람들, 곧 그에 금전이나 재물을 걸어 도박에 참여하는 이들을 유인하는 핵심적 요인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특수한 기술이나 능력이 없더라도 소량의 금전을 가지고 우연의 놀이를 즐길 수 있는 도박으로는 복권에 견줄만 한 것이 그리 많지 않은 턱이다. 이러한 복권의 도박적 성격

5) Caillois(1994)는 놀이를 아곤(Agôn, 경쟁 놀이), 알레아(Alea, 우연 놀이), 미미크리(Mimicry, 모의 놀이), 일렁크스(Ilinx, 현기증 놀이)의 넷으로 분류한다. 도박은 이 중 알레아에 속하며 주식투기는 그것이 사회생활에 편입된 제도적 형태라고 한다. 그리고 미신과 점성술 등은 알레아의 타락한 형태로 간주한다. 이러한 Caillois의 분류는 도박과 주식 투기의 관계를 비교적 잘 식별할 수 있게 해준다.

이 또한 다음 절에서 살펴볼 합법화의 논리에서 보면 매우 효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만드는 요인으로 고려될 것임은 물론이 겠다.

2. 도박(복권) 합법화의 논리와 실제

앞에서 열거했듯이 한국 사회에서 합법적 지위를 누리는 도박은 경마, 카지노, 슬롯머신, 경륜과 복권이다. 곁으로는 이들을 합법화하게 된 배경이 각기 다르게 보여질 수 있다.⁶⁾ 그러나 도박 합법화의 가장 중심적 합리화 논리는 국가 재정의 확충 문제로 수렴시킬 수 있다. 이 논리의 구성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미 많은 사람들이 도박—불법적 도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제된다. 때문에 국가가 이에 개입하여 보다 건전한 방향으로 이끄는 동시에 그런 도박을 즐기는 이들로부터 ‘자원해서 내는 세금(voluntary tax)’ 또는 ‘고통 없는 세금(painless tax)’(Blakey, 1979)을 걷는다면, 이는 이론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주장된다(Hybels, 1979; Dombrink, 1981; Anderson, 1991; Cline, 1995).

한국 사회의 경우에도 이런 논리는 그대로 적용된다. 잘 알려진 대로 1960년대 이후 국가가 강력히 주도하여 이룩한 경제 발전은 막대한 외채의 부담을 안고서 전개됐다. 하지만 이 경제 발전은,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든 간에 국민의 다양한 욕구를 창출하고 그 충족되어야 할 수준을 높여 놓는다. 따라서 국가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 규모를 확대시켜 그에 걸맞는 정책을 집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문제는 재정의 확대를 세수의 증대를 통해 보

6) 예컨대 주택복권은 집없는 사람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해주기 위한 기금 비축에 필요하며, 카지노는 외국인 전용으로 허가하면서 관광 수입과 외환 보유고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합리화한다. 그리고 경마는 양질의 말 사육을 조장하는 등 궁극적으로 축산의 발전을 도모하며, 경륜은 사이클 경기의 활성화와 기금 축적을 통한 체육 진흥을 합법화의 논리로 내세운다(김석준·강세현, 1996a: 25-7).

충해야 하지만 각종 명목의 새로운 세금의 부과나 세율의 인상이 시민의 조세 저항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러한 저항이 그렇지 않아도 그 동안 취약했던 정치 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도전으로 전환될 가능성 역시 항존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라면 '자원해서 고통 없이 내는 세금'인 합법적 도박이 훌륭한 대안으로 떠오를 게 당연하다.

이러한 추론은 이른바 경제 발전의 어두운 면들이 불거지기 시작하여 재정 압박이 심해진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에 걸친 기간(김종철, 1986; 박현채, 1985; 임영일, 1985; 한상진, 1989)에 특정 도박이 새로이 합법화되거나 기존의 것이 확장되는 모습을 확인할 때 수긍하게 된다. 일제 식민치하에서도 융성했던 경마는 해방과 한국 전쟁, 4·19와 5·16을 거치면서 60년대 초반까지는 위축된다. 그러다가 1964년 대통령배 경마가 개최되기 시작하고, 1970년에 이르러 최초의 장외마권발매장이 개장된다(한국마사회, 1995).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는 상징성을 지닌 대통령배 경마와 수익 증대를 위한 사업 확장이 이 시기부터 시작된 것이다. 국내의 첫 카지노가 1967년에 개장했다는 점과, 한시적으로 발행되던 관례를 깨뜨리고 현재까지도 계속 판매되고 있는 주택 복권이 1969년에 처음 발매됐다는 사실에서도 그 시기의 의미에 유념할 필요가 있겠다(고택운, 1994; 한겨례신문사, 1995).

그후 이러한 확장 추세는 계속 이어지다가 90년대 들어, 그것도

7) 예를 들어 카지노의 경우 70년대 말까지 5개소가 더 개설되고, 80년대에 2개소, 90년대에 들어와서 1996년 3월 현재까지 6개소가 더 개설되어 모두 14개소가 문을 열기에 이른다. 현재 경마는 1989년에 이전·개장한 파천경마장과 1990년 신설한 제주경마장에서 운영되고 있고 새로운 경마장이 경주에 개설 중이며, 앞으로 충청권에도 개장할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동아일보, 1996. 3. 16일자). 마권의 장외발매장도 꾸준히 확충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1994년부터 시작한 경륜의 경우에는 현재 1개 경륜장이 운영되고 있으나, 제2경륜장을 안양에 건립할 계획을 검토하는 중에 있고 부산을 비롯한 지방 도시 6군데에 경륜장 개설과 장외발매장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스포츠조선, 1996. 4. 29일자).

특히 1994년 이후에는 급격히 가속화된다.⁷⁾ 지방자치제의 본격화가 이런 가속화의 중요한 요인임은 명백하다. 지방화 시대의 취약한 지방 재정의 확충 방안으로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합법적 도박의 도입을 계획하거나 실천에 옮기고 있기 때문이다(김종순, 1995). 이 글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복권의 경우에도 이런 양상은 비교적 뚜렷이 나타난다(김석준·강세현, 1996a: 47-50).

해방 이후 한국 사회에서 복권이 처음 선보인 것은 1947년 12월 1일이다(한겨레신문사, 1995).⁸⁾ 1948년의 런던올림픽 대회 참가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한국올림픽위원회가 '올림픽후원권' 140만장을 발행한 것이다. 이 후원권은 서울지역에서만 판매됐다. 그 뒤 1949년 10월부터 1950년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대한민국 사회부에서 '후생복표'를 만든다. 이 복표는 이재민구호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명칭을 복권이라고 하기 시작한 것은 1956년 조홍은행을 통해 산업부통자금과 사회복지자금의 조성을 목적으로 정부가 발행한 '애국복권'이다. 뒤를 이어 1962년의 산업박람회와 1968년의 무역박람회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복권 발행이 있게 된다.

그런데 최근에 카지노의 개설은 획기적으로 더 확장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카지노 개설을 이전보다 손쉽게 할 수 있도록 1994년도에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어 부산에 1개소가 더 들어설 예정이고, 강원도의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이 1995년 12월 국무회의를 통하여 폐광 지역에 1개소를 더 개설할 계획이 확정되어 있다. 다른 카지노가 외국인 전용인 것과 달리 폐광 지역에 들어설 카지노는 내국인 출입도 허용한다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 앞으로 다른 지역의 카지노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때 어떤 방식으로 결론이 날린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제주도가 종문관광단지에 2천 8백억 원을 투입해서 건립하려는 컨벤션센터에도 새로이 카지노를 유치할 계획이라는 점도 위의 추세와 무관하지 않다(제주신문, 1996. 8. 13일자).

- 8) 그러나 실제로는 1947년 3월에 발행된 충청북도의 '복표'와 같은 해 11월 전라북도 후생사업협회가 발행한 '후생복표'도 있다. 이들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지방에서만 발행된 특징을 지닌다. 최근의 '자치복권'의 원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조선일보사, 1995).

복권 발행의 수익금을 기금으로 적립하기 시작한 것은 1969년 9월 15일 한국주택은행법에 따라 발행된 주택 복권부터이다. 발행 당시 액면가는 1백원이고 1등 당첨금은 3백만원이었는데 군경 유가족, 국가유공자, 파월장병들에게 집을 지어주기 위한 목적을 표방했다. 그후 주택 복권은 주택건설 촉진법이 1972년 12월 30일 제정 공포되면서 기금의 사업 대상을 확대시켜 수익금을 국민주택자금 조성에 사용하게 된다. 그 뒤로 주택복권은 점차 발행 횟수를 늘리고 액면가와 당첨금의 수준을 높여가다가 1983년 4월 1일부터 1988년 12월 31일까지 한 때 올림픽 복권으로 전환되기도 한다. 그러다가 1990년 9월 엑스포복권⁹⁾과 체육복권이 발행되면서 독점체제가 무너지고 복권은 갖가지 명목으로 때로는 한시적으로 때로는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발행되기 시작한다.

현재 국내에서 발매되고 있는 복권은 주택, 체육, 기술, 복지, 기업, 자치 및 관광복권 등 모두 7종이다. 이 가운데 주택 복권을 제외한 나머지 6종 중 체육복권은 1990년에, 기술복권은 1993년에 발행을 개시했지만, 1994년부터 1995년 8월까지의 시기에 4종 [복지(94년), 기업(95년), 자치(95년), 관광복권(95년) 등]이 발행되어 새로운 복권의 발행은 이 기간에 집중되어 있다. 발행되는 복권의 종류와 양이 1994년 이후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¹⁰⁾

잠정적인 추계지만, 주택, 체육, 기술복권만 발매 이후 1994년 말

9) 엑스포복권은 대전세계박람회의 개최를 위한 지원법에 근거하여 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 발행했다. 1993년 12월 31일 발행을 중단할 때까지 150,496백만원어치를 발행, 판매액 136,003백만원, 당첨금 65,185백만원, 총수입 70,018백만원을 올렸다(한겨레신문사, 1995).

10) 여기에만 머물지 않고 정부는 2002년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확정된 월드컵 축구 경기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복권 발매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한국경제신문, 1996. 6. 2일자). 또 하나의 복권이 곧 추가되면 판매를 위한 마케팅 전략은 더욱 치열해지고 그만큼 복권 구입으로 유인될 일반인 수도 늘어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환경부의 환경복권, 부산광역시의 아시안게임 복권도 1995년에 발행 계획을 추진했으나 좌절됐지만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동아일보, 1996. 4. 26일자).

까지 총 1조 9천 5백 60억원 가량을 판매했고, 총수입은 1조 8천 3백억원을 넘는다(한겨레신문사, 1995). 500원, 1천원짜리 복권을 판매하면서 손쉽게 상당한 양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것만 보더라도 복권이 세수를 증대시켜 재정을 보완해주는 효과가 적지는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힘입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을 위해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에서는 자치복권을 1996년도에 전년도의 4배가 넘는 2천 4백억원 어치를 판매하기로 했다고 한다(한겨레신문, 1995. 10. 17일자).

주목할 점은 제주지역의 경우 1995년 7월 1일부터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다른 시도와 달리 제주도가 발행 주체가 되어 관광복권을 한 가지 더 발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관광 복권은 1995년 1월 5일 개정된 제주도개발특별법 제31조 2항에 의거하여 발행되고 있다. 2001년까지 7년간 총 3천 1백 50억원어치 6억 3천만매를 발매하여 765억원의 재정 수입을 얻겠다는 계획으로 있다.¹¹⁾ 발매 후 1996년 5월말까지 총 270억원, 5,400만매를 팔아 51억 2천만원 가량의 수익을 보았다. 원래의 목표량에는 못 미치지만, 1년이 채 안되는 기간 동안 50억원을 넘는 지방 재정을 수월하게 장만한 셈이다(제주신문, 1996. 7. 17일자).

이상에서 복권만 하더라도 그 재정 확충과 보완의 기능은 일정하게 충족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합법적 도박도 그런 기능

11)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 잡혀있는 투자규모는 총 8조 2,144억원이다. 그 재원은 공공자본 4조 61억원과 민간자본 4조 2,083억원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공공자본 중에 지방비의 뜻은 6,508억원이고, 국비는 3조 3,553억원이다. 여기서 제주도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 중 5,003억원은 기준의 지방세 등 수입원에서 충당하고, 나머지 1,505억원은 지역개발채권(475억원), 생수판매(265억원), 그리고 관광복권 판매 수익금 765억원 등의 신규재원 확보로 채울 예정이다. 따라서 765억원의 관광복권 판매 수익예상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공공투자 전체의 1.9%, 지방비의 11.8%, 신규재원의 51%에 해당한다(김종순, 1995: 112-3). 개발계획의 전체 투자규모로 볼 때는 매우 작은 비중이지만, 지방비와 새로이 확보할 신규재원 중에는 비교적 담당할 부분이 크다. 이는 제주도가 관광복권에 거는 기대가 어느 정도인지를 잘 나타낸다.

에 있어서는 복권과 다름없이 국가재정에 기여하는 바가 적지는 않을 것이다.¹²⁾ 그렇지만 국가가 도박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는 그 정책적 이득이 아무리 크더라도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사회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여론의 반발에 자주 부딪친다.¹³⁾ 때문에 국가기구의 이에 대한 설득 또한 도박 합법화의 한 논리를 구성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많은 사람이 불법적 도박을 하지만, Schur(1969:195-6)가 ‘피해자 없는 범죄(crimes without victims)’의 하나로 불법적 도박을 지목했듯이 그에 대한 국가의 사법적 통제는 그리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본다. 따라서 도박의 합법화는 불법적 도박 참여자를 공개된 장소로 유도함으로써 범죄화의 비율을 낮출 수 있음은 물론, 합법화 된 도박은 공개되어 있는 만큼 그에 대한 통제와 감시가 용이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도박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¹⁴⁾ 게다가 도박에 대한 조직범죄 집단의 관여 역시 보다 철저히

12) 여기서 직접 논의하지 않은 카지노와 경마 등의 재정 확충 기능에 대해서는 김석준·강세현(1996a: 50-3; 1996b)에 간략히 정리되어 있다.

13) 그렇다고 합법적 도박의 재정 보완 기능에 대한 문제제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경우 주 발행 복권(state lottery)이 주의 재정적 불균형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Mikesell and Zorn(1986)의 지적이라든지, 합법적 도박을 통한 세수 확대가 일종의 역진세(regressive tax)를 강화시켜 과세의 형평성 원리에 위배된다는 Brinner and Clotfelter(1975), Suits(1979), Borg, Mason and Shapiro(1991) 등의 논의도 면밀히 검토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합법적 도박(복권)의 사회적 영향을 따지는 데 치중하기로 하고 그와 같은 재정사회학적(fiscal sociological) 측면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은 가하지 않겠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구가 요구된다고 보며 이를 차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14) 도박 합법화의 사회적 영향에 관한 이런 합리화 논리는 국가간에 큰 차이가 없다. 필리핀 대통령 Ramos도 복권 발행의 의의를 사람들의 도박 성향을 만족시키면서 불법적 도박을 대체하는 데 두고 있다. 그는 1995년 11월 15일 기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Business World Online Edition, 1995. 11. 16일자). “불법적 도박의 박멸은 경찰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의미있는 대안을 통해서 가능하다…… 나는 복권이 일시적인 것으로서가 아니라 이 나라에 뿌리를 내릴 때가 오리라고 본다…… 우리는 이 대안을 사람들이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통제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도박을 합법화함으로써 오히려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더 완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인 것이다(Kallick-Kaufman and Reuter, 1979; Hybels, 1979; Anderson, 1991; Cline, 1995).

그러나 이러한 합법적 도박의 '탈일탈화(undeviantization), 탈낙인화(destigmatization) 전략(Dombrink, 1981: 18-24)'에 대한 반론은 그리 드물지가 않다. 다음 절에서 이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검증해볼 가설을 추출해보고자 한다.

3. 도박(복권) 합법화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쟁점과 검증을 위한 가설의 도출

도박 합법화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평가는 도박 자체의 도덕적·윤리적 성격을 긍정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근본적으로 전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선입견이나 편견으로부터 벗어나 보다 객관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 들여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경험적 연구 성과들로부터 쟁점을 정리해내는 방식이 무난하리라 본다.

합법적 도박의 사회적 영향은 대체로 문제 도박 참여자(problem gambler) 또는 도박 중독자(addictive or compulsive gambler)¹⁵⁾의 증가와 그로 인해 파생하는 범죄 및 가정과 직장에 대한 영향, 불

15) Lorenz, Politzer and Yaffee(1990)는 문제 도박 참여자와 도박 중독자를 개념적으로 구분한다. 전자는 도박을 더 이상 놀이나 여가 활동으로 볼 수 없게 된 사람으로서 도박 참여의 시간이나 도박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이 자신이 의도한 한계를 초과하는 자들이다. 이들의 도박 참여는 우연적이기보다 의도적이며, 따라서 병리적 도박꾼(pathological gambler)으로 전화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후자의 도박 중독자는 의사나 심리학자의 치료가 요구되는 병리적 도박꾼을 말한다.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는 이 병리적 도박을 충동통제정신질환(impulse-control disorder)의 하나로 1979년의 DSM-III(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Third Edition)부터 정식으로 수록시키기 시작했다(Lowenkopf, 1991).

법적 도박의 지속과 확산, 조직범죄 집단의 관여와 정치적 부패의 빈발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되는 경향이 있다(Dielman, 1979; Dombrink, 1981; Pizam and Pokela, 1985; Mikesell and Pirog-Good, 1990; Lorenz, Politzer and Yaffee, 1990; Simon, 1995). 그러나 이 글에서는 그러한 쟁점의 모든 사항을 다루기보다 위에 열거한 것 중 앞의 두 문제의 몇몇 측면에만 우선 관심을 가지고자 한다. 다른 사항이 덜 중요해서가 아니라 수집된 자료의 한계 때문이기는 하지만 그에 대한 연구는 차후의 과제로 보류할 수밖에 없다.

적지 않은 선행연구들은 합법적 도박의 확산이 문제 도박 참여자나 도박 중독자의 증가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한다. Goodman(1995)은 미국의 각 주별 문제 도박 참여자의 구성비가 그 주의 도박 합법화의 기간과 도박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밝힌다. 최근에야 합법적 도박을 도입한 아이오와주는 성인 인구의 약 1.5%만이 문제 도박 참여자이지만, 주 발행 복권의 역사가 20여년이 지난 코네티컷주는 성인 인구의 약 6%나 된다.¹⁶⁾

Goodman은 또 새로운 도박을 합법화하여 추가시키면 그러한 인구의 구성비도 커진다고 주장한다. Lorenz, Politzer and Yaffee(1990)의 연구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들의 연구는 1972년에 주발행 복권을 주민 투표로 합법화한 미국 메릴랜드주의 1989년도 도박 중독자 구성비를 성인 인구의 약 1.5%로 추산하고 있다. 이 수치는 적게 잡았을 때의 결과인데도 70년대 중엽에 비하면 두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Volberg(1994)도 미국의 주별 문제 도박 참여자의 분포가 1인당 복권 판매율과 주민이 합법적 도박에 노출된 기간과 상관관계에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요컨대 이상은 합법적 도박(복권)의 도입이 문제 도박 참여자와

16) 미국의 복권 역사는 식민지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1994년 말 현재 36개 주와 워싱턴(Washington D.C.)에서 발매되고 있는 주발행 복권은 1963년의 뉴햄프셔주를 시발점으로 한다. 그 뒤를 이은 선발주자가 코네티컷주, 뉴욕주, 뉴저지주이다(Blakey, 1979; Cline, 1995).

도박 중독자의 수를 증가시킨다는 경험적 연구결과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합법적 도박의 영향에 대해 Abbott, Cramer and Sherrets(1995)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해 보인다. 첫째는 도박 합법화의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주민의 도박에 대한 사회적 태도가 부정적인 데서 긍정적으로 변했고,¹⁷⁾ 둘째로는 도박의 합법화로 그에 대한 일반인들의 접근이 그 전보다 손쉽게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셋째는 점차 많은 사람들이 정서적 및 경제적으로 스트레스가 커진 가정에서 살게 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Hybels(1979)는 한 종류의 도박을 합법화하게 되면 그와 동종의 합법적·불법적 도박 참여를 증가시키거나 이는 양자가 서로 배척·대체하는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를 테면, 경마장에서 합법적 도박을 하는 이들은 합법적 장외발매장에서도 할 뿐만 아니라 불법적 경마에도 참여하며, 주 발행 복권을 사는 사람들은 그와 유사한 불법적 숫자게임(numbers game)에도 참여하는 울이 높아진다.

이에 더해 Suits(1979)는 합법적 도박이 불법적 도박과 출발부터 경쟁할 수 없는 까닭에 도박을 합법화하더라도 불법적 도박을 완화 시키기는커녕 적어도 온존시키거나 더 증대시킨다고 본다. 합법적 도박은 세금을 내는 부분이나 각종의 운영비를 제외시킨 나머지 몇의 전부 혹은 그 일부를 참여자들에게 환급시키지만, 불법적 도박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없으므로 그보다 더 많은 액수를 환급시킬 수 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합법적 도박의 환급률을 불법적 도박의 수준으로 높이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그러한 일은 도박을 합법화한 목적, 곧 ‘고통 없는 세금’걷기를 포기하는 것이 될 뿐

17) 도박의 합법화를 찬성하거나 이를 통해 이득을 볼 수 있는 기업가나 정치가들이 어떤 방식으로 주민을 설득하는가에 대해서는 Dombrink(1981)가 잘 정리하고 있다. 그는 이를 탈일탈화·탈낙인화의 전략으로 풀이한다. 이 전략에는 은폐(concealment), 귀착(withdrawal), 중화(neutralization)와 정치화(politicization)의 네 가지가 있다. Dombrink는 이 가운데 특히 후자의 두 전략이 그러한 설득에 잘 동원된다고 본다.

이다. 우리나라 복권의 전체 당첨금이 발행액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김석준·강세현, 1996a: 48)은 이러한 Suits의 논의로 보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그런데, 합법이든 불법이든 상관없이 사람을 도박에 참여하도록 이끄는 어떤 요인은 없을까? 이를 토론하기 위해서는 도박이 사람들 을 끌어당기는 흡인력이 무엇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도박이 갖는 매력은 도박 행위 자체가 갖는 성격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도박은 불확실한 사건의 결과에 기대어서 내기를 거는 행위이고 일종의 위험 부담 행위이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내기를 거는 것은 인간의 내면에 잠재하고 있는 자극과 위험 부담을 즐기려는 심리를 충족시켜주는 기능을 한다(Knowles, 1976; Ginsberg, 1976; Lorenz, Politzer and Yaffee, 1990). 또한 게임의 승패가 전략과 기능에 크게 좌우되는 경우에, 도박은 도박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기능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일상적인 어떠한 활동보다도 도박이 갖는 또하나의 색다른 매력적 속성은 게임에서 이겼을 경우에 그에 대한 보상이 즉시 이루어지고 또 별다른 방해없이 위험 부담 행위에 연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Goffman, 1967). 이처럼 도박은 자극과 흥분, 위험 부담과 모험을 즐기려는 욕구, 즉각적인 욕구 충족과 같은 잠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그러한 속성의 도박이 인구 및 사회경제적으로 어떠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매력적일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 Herman(1967), Newman (1977), Zola(1963)는 실제 생활에서 체험하지 못한 모험적 기업가적 역할의 요소를 도박을 통해 체험해 보려는 하층 계급의 사람들에게 특히 매력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Dombrink, 1981:44-5). 말하자면 도박은 일상적 일과 가족 생활에서 좌절감을 느끼는 하층 계급의 사람들에게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줌으로써 매력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는 상대적 박탈감의 해소를 위한 자극의 충족도 이와 관련된다고 한

다(Mikesell and Pirog-Good, 1990).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성취 욕구에 대한 좌절의 주 원인이 자신이 처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기인한다고 볼 수 없는 중상 계급 범주에서의 도박 참여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 그래서 오히려 도박을 통해 순전히 도전감과 모험심을 만끽해보려는 중상 계급의 성원들이 도박을 더 선호할 것이라고 주장(Devereux, Jr., 1974: 57)할 수도 있다.

이외에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도박에의 접근을 조절·제어하게 되어 참여율이 차이가 있다고 보고되는가 하면, 남녀간의 사회화의 차이, 생애 주기에 따른 특성 등도 도박 참여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김석준·강세현, 1996a: 64~91).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검토도 첨가해야 할 것이다. 만약에 그러한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들에 따라 도박에 대한 접근가능성, 곧 복권 구입 여부가 달라진다면 이를 통해 변수로 삼아 분석을 해야 아래에 정리할 가설적 명제의 구성에 동원될 변수들의 관계가 더 명확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이상의 논의에서 합법적 도박인 복권의 사회적 영향을 검토하기 위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추출해볼 수 있다.

첫째, 복권은 합법적 도박의 한 유형이다. 도박의 합법화는 그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시민들을 설득함으로써 도박에 대한 의식이나 태도를 보다 관용적인 방향으로 형성되도록 만들 가능성이 있다. 같은 맥락에서 복권의 도입과 발매하는 종류와 양이 증가하면 할수록 그것의 합리화와 구입을 유인하기 위한 전략과 설득을 통해 시민들의 도박에 대한 태도를 보다 관용적으로 변모시켜 나갈 것이다. 따라서 그에 노출되어 복권 구입의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도박에 대한 태도는 더욱 더 허용적이 되리라 추리할 수 있으며 이를 가설 1이라 한다.

둘째, 도박을 합법화할 경우 불법적 도박의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오히려 불법적 도박에의 참여를 온존시키거나 더 확장시킨다는 증거도 만만치 않다. 이런 점에서 복권 구입자들이 과연 다른 종류의 도박에 참여하는 정도가 어떠한지는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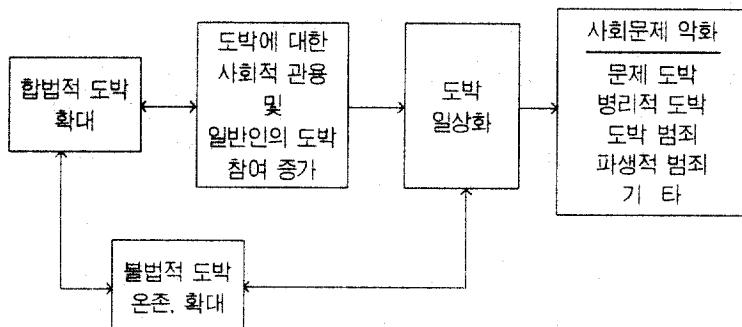
해볼 가치가 있다. 사실상 우리 사회의 경우 일반인들이 주로 즐기는 화투나 카드, 윷놀이 등의 도박은 형법상 불법적인 것이나 다름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복권 구입자들이 다른 도박에의 참여율도 높다면 이는 복권이라는 합법적 도박이 불법적 도박 참여를 온존 혹은 확장시키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그리고 만일 복권 구입 경험이 많을수록 다른 도박에의 참여가 증가한다면 이는 복권 발매가 종국적으로 문제 도박 참여자나 도박 중독증 환자를 양산할 개연성도 우려해 보아야 한다. 그래서 가설 2는 둘로 나누어 검증한다.

가설 1) 복권 구입 여부는 도박에 대한 허용적 태도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복권 구입 경험이 많을수록 다른 종류의 도박에 참여하는 정도도 높아질 것이다.

가설 2-2) 복권 구입 경험이 많을수록 문제 도박 성향도 강화될 것이다.

결국 이상에서 우리의 검증 대상이 된 가설들은 김석준·강세현(1996b)이 제안한 도박과 사회문제의 인과관계 도식과 논리적으로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도식은 아래의 〈그림 1〉과 같이 요약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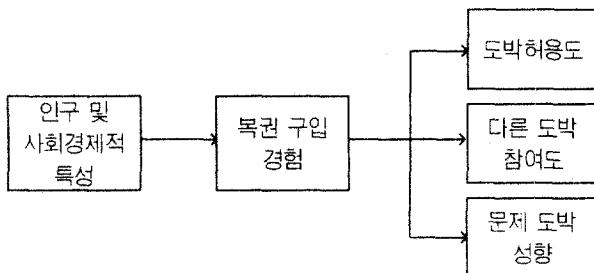


〈그림 1〉 도박으로 인한 사회 문제 발생의 인과관계 틀(김석준·강세현, 1996b)

이에 의하면 이 글에서 검증하려는 가설들은 위의 도식의 일부에 대한 것이고, 〈그림 1〉로부터 〈그림 2〉와 같이 재구성시킨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틀의 재구성은 분석의 편의와 논의의 간결화를 겨냥한 것임은 물론이다.

〈그림 2〉에서 ‘복권 구입 경험’은 〈그림 1〉의 ‘합법적 도박 확대’와 상용하는 관계이고, ‘도박 허용도’는 ‘도박에 대한 사회적 관용’과 그런 관계에 있다. 그리고 위의 가설 2-1의 제안 설명에서 언급했듯이 〈그림 2〉의 ‘다른 도박 참여도’는 〈그림 1〉의 ‘일반인의 도박 참여 증가’와 ‘불법적 도박 온존·확대’를 동시에 함축하는 것으로 간주해도 좋다. 〈그림 2〉의 ‘문제 도박 성향’은 〈그림 1〉에서 ‘도박의 일상화’ 경로를 생략한 후의 사회 문제 중 하나인 문제 도박의 발생 가능성을 감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림 2〉의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의 변수는 그 변수의 범주별로 ‘복권 구입 경험’ 곧 ‘합법적 도박 확대’의 영향이 어떻게 차별적으로 미치게 될지의 여부를 선행해서 따지기 위해 설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 가지 〈그림 1〉과 〈그림 2〉에서 중요한 차이라면, 전자에서는 인과 경로가 가역적으로 구성된 부분이 후자에서는 일방적 관계로 이어진 곳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가 위의 가설들을 검증·분석하는 데 있어서 시간적 선후관계를 일단 후자와 같이 가정해두었음을 뜻할 뿐, 실질적으로는 전자의 인과 경로가 더 현실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가정은 이 글이 부담해야 하는 한계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림 2〉 분석틀

III. 자료와 분석방법

1. 자료의 성격

이 글에서 이용하고 있는 자료는 지난 1995년 5월에 제주지역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도박의 실태와 의식에 관한 사항을 설문조사 한 것이다. 설문조사의 표집은 제주지역의 20세 이상 모든 성인 남녀를 모집단으로 하여 표집 지역의 인구 비율, 남자와 여자의 성비, 각 연령층의 인구 구성상의 비율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비례적 충화 집락표집법(proportionate stratified cluster sampling)에 따라 이루어졌다.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한 질문지는 712부이다.¹⁸⁾

2. 변인의 측정과 분석방법

1) 인구 및 사회경제적 배경

이 글의 분석에 포함한 인구 및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는 응답자의 연령, 성별, 결혼상태, 학력, 종교, 직업, 본인의 월수입, 주관적 계층이다. 인구 및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들의 구체적 범주들은 이 글의 ‘분석 결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에 나타난 대로이다.

2) 복권 구입 경험

복권 구입 경험은 “선생님은 복권을 구입해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 문항을 가지고 측정하고자 했는데 응답 범주는 ‘자주 있었다(4점)’, ‘가끔 있었다(3점)’, ‘별로 없었다(2점)’, ‘전혀 없었다(1점)’와 같이 4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실제 분석에서는 위의 네 범주를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고 보다 단순하게 복권을 구입한 적이 ‘있

18) 조사 설계 및 실시, 변수 측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김석준·강세현 (1996a : 37-46)을 참조할 것.

다’, ‘없다’ 두 범주로 나누어 사용하기도 했다.

3) 도박허용도

도박허용도는 7개의 문항을 요인분석한 후 판별된 도박 및 도박 행위자에 대한 의식에 관한 아래의 네 문항의 각 응답에 대해 ‘정말 그렇다’ 1점, ‘대체로 그렇다’ 2점, ‘그저 그렇다’ 3점, ‘별로 그렇지 않다’ 4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까지 점수를 부여하여 모두 합한 점수이다. 따라서 그 점수가 높을수록 도박에 대해서는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조작화했다.

- ① 어떤 종류이든 돈내기 도박은 우리 사회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 ② 도박을 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법규를 더 강화해야 한다.
- ③ 도박을 하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생활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 ④ 우리 사회는 도박으로 인한 문제가 너무 크다.

4) 다른 종류의 도박 참여도

다른 종류의 도박 참여도는 일반인들이 돈내기 놀이, 곧 도박으로 자주 이용하고 있는 화투, 카드, 웃놀이에서 지난 1년간 돈을 걸고 그러한 놀이를 해본 적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응답을 바탕으로 측정했다.¹⁹⁾ 각 놀이 유형에 대한 응답의 ‘전혀 없다’에는 1점, ‘한두번 정도’는 2점, ‘서너번 정도’는 3점, ‘다섯번 이상’은 4점을 각각 부여하고 모두 합한 점수를 다른 종류의 도박 참여도로 조작화했다.

5) 문제 도박 성향

문제 도박 성향은 개인과 사회에 악영향을 불러일으킬 위험성이 있는 문제 도박으로 진전될 성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변수

19) 제주지역에서 일반인들이 돈내기 노름에 자주 이용하고 있는 승부놀이의 종류는 화투(54.1%), 웃놀이(27.4%), 카드(21.2%)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석준·강세현, 1996a: 60—5).

이다. 그런데 오락 및 친교성 도박과 문제 도박 유형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도박 참여의 이유, 그 가운데서도 돈을 따기 위한 도박 참여 여부로 볼 수 있으므로(Lorenz, Politzer and Yaffe, 1990), 여기서는 분석에 포함한 돈내기 화투, 카드, 웃놀이 각각에 있어 돈을 따기 위해 '자주 한다'는 2점, '가끔 한다'는 1점, '별로 안 한다'와 '전혀 안한다'는 0점을 부여하여 모두 합한 값을 문제 도박 성향으로 조작화했다.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조사대상자의 인구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가 345명(48.5%), 여자가 367명(51.5%) 포함되어 있고, 연령별로는 20대 225명(31.6%), 30대 180명(25.3%), 40대 109명(15.3%), 50대 이상이 198명(27.8%)이며, 결혼상태별로는 미혼 221명(31%), 기혼 434명(61%), 이혼·별거한 경우가 57명(8%)이다.

조사대상자의 학력은 중학교 졸업 이하가 217명(30.5%), 고등학교 중퇴 및 졸업이 241명(33.8%), 전문대 및 초대 졸업 이상이 163명(22.9%)이며, 이외에 기타 범주에 응답한 경우가 89명(12.5%), 무응답이 2명(0.3%) 포함되어 있다.

종교별로 보면,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284명(39.9%)이고, 불교 284명(39.9%), 기독교 86명(12.1%), 천주교 52명(7.3%), 기타 6명(0.8%)이다.

직업별로는, 전문·관리직 38명(5.3%), 사무직 51명(7.2%), 판매·서비스·생산·기능직(자영) 211명(29.6%), 판매·서비스·생산·기능직(파용) 77명(10.8%), 단순노동·수워·행상 등 19명(2.7%), 농어민 82명(11.5%), 학생·군인·무직 125명(17.6%), 주부 106명(14.9%)이고, 무응답한 경우가 3명(0.4%)이다.

주관적 계층은 하층 104명(14.6%), 중층 388명(54.5%), 중상층 216명(30.4%)이며 무응답한 경우가 4명(0.6%)이다.

IV. 분석결과

1.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별 복권 구입 정도

제안된 가설들을 검증하기에 앞서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복권을 구입하는 정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이에 대한 분석은 그 결과만으로도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별 복권 구입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준다. 뿐더러 뒤의 분석에서는 그러한 특성들이 통제 변수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명묘한 해석을 위해서도 그 상관성을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변량분석을 통해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별 복권 구입 정도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가 〈표 1〉과 〈표 2〉이다.

〈표 1〉 인구적 특성별 복권 구입 정도의 변량 분석 결과 요약표

구 분	복권 구입 정도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F	
연령	20대	2.13	.96	225	25.65***
	30대	2.24	1.02	180	
	40대	1.82	.95	109	
	50대 이상	1.47	.86	198	
성	남자	2.20	1.01	345	53.45***
	여자	1.67	.92	367	
결혼상태	미혼	2.14	.98	221	12.44***
	기혼	1.89	1.00	434	
	이혼·별거	1.44	.85	57	

*** p < .001

〈표 1〉은 인구적 특성별 복권 구입 정도의 변량분석결과를 요약해 시한 것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복권 구입 정도는 30대(2.24), 20대(2.13), 40대(1.82), 50대 이상(1.47)의 순으로 낮아져 장년 및

노년층에 비해 20~30대의 청년층이 복권을 더 많이 구입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성별로는 여자(1.67)보다 남자(2.20)의 복권 구입 정도가 훨씬 높으며, 결혼상태별로는 미혼인 경우(2.14)가 가장 높고 이어서 기혼(1.89), 이혼·별거(1.44)의 순서이다.

(표 2)에서 사회경제적 특성별 복권 구입 정도를 볼 수 있다. 학력별 평균을 비교해 보면, 전문대 및 초급대학 중퇴 이상의 범주(2.26)가 가장 높고, 다음이 고등학교 중퇴 및 졸업, 중학교 졸업 이하의 순으로 낮아져 일관되게 학력이 높을수록 복권 구입 정도 역시 높아지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직업별 복권 구입 정도는, ① 사무직(2.31), ② 학생·군인·무직(2.14), ③ 전문·관리직(2.13), ④ 판매·서비스·생산·기능직(피용)(2.08), ⑤ 단순노동·수위·행상 등(2.00), ⑥ 판매·서비스·생산·기능직(자영)(1.95), ⑦ 주부(1.62), ⑧ 농어민(1.48)의 순으로 점차 낮아진다. 본인의 월수입별 복권 구입 정도를 보면, 2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의 경우가 가장 높고(2.21), 다음이 90만원 이상~199만원까지의 범주(1.97)이며, 이어서 수입이 없는 범주(1.94), 30만원 미만~89만원까지의 범주(1.74)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종교와 주관적 계층 변수가 복권 구입 정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제적으로 의미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세 가지 인구적 특성 모두와 사회경제적 특성 중의 학력, 직업, 본인의 월수입 변수들이 그 자체로서도 복권 구입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들일 수 있음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분석을 더 진행하기 전에 이 결과를 간단히 재정리하면서 제주 지역 주민들의 복권 구입 정도의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겠다.

앞에서 토론했듯이 복권 구입, 곧 도박 행위는 그 속성상 자극과 모험을 추구하는 일종의 위험 부담 행위인데, 인구적 특성으로 볼 때 복권 구입자는 그런 종류의 위험 부담을 선호하거나 수용할 수 있으리라 기대되는 집단 범주에서 더 많다고 할 수 있다(Knowles, 1976; Ginsberg, 1976). 인구적 특성상에 있어, 젊은 층과 미혼 층은 장년과 노년층에 비해 인생 역정이 그다지 길지 않은 만큼 실패 경험이 적고 위험 부담이 되는 일을 해도 책임과 의무가 크게 따르

〈표 2〉 사회경제적 특성별 복권 구입 정도의 변량 분석 결과 요약표

구 분		복권 구입 정도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F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1.45	.83	217	41.44***
	고등학교 중퇴·졸업	2.07	.97	241	
	전문대 및 초대 중퇴 이상	2.26	1.02	163	
종교	종교 없음	2.01	.98	284	2.45
	불교	1.82	.99	284	
	기독교	1.93	.99	86	
	천주교	2.13	1.07	52	
직업	전문·관리 직	2.13	.91	38	6.55***
	사무직	2.31	1.07	51	
	판매·서비스·생산·기능직(자영)	1.95	1.08	211	
	판매·서비스·생산·기능직(파용)	2.08	.94	77	
	단순노동·수위·행상 등	2.00	1.00	19	
	농어민	1.48	.80	82	
	학생·군인·무직	2.14	.95	125	
월수입 (본인)	주입 없음	1.94	.94	202	5.52***
	30만원 미만—89만원	1.74	.98	219	
	90만원—199만원	1.97	.99	184	
	200만원	2.21	1.08	101	
주관적 계층	하층	1.75	.98	104	1.96
	중층	1.96	.97	388	
	중상층	1.95	1.03	216	

*** p < .001

지 않는 범주에 속한다. 또 남자들은 사회화 과정에서 여자보다는 통제를 덜 받으며 자유롭게 자라났다는 점에서 위험 부담 행위를 해도 상대적으로 더 잘 용인 받거나 그것을 선호할 경향이 높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사회경제적 특성에 있어 비교적 높은 학력층, 고소득층 범주의 사람들에게서 복권 구입 정도가 높다는 사실은 복

권 구입도 도전감과 성취의 욕구를 합법적 수단과 자원 동원을 통해 서도 실현할 여력이 어느 정도 있는 집단에서 오히려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Devereux, Jr., 1974: 57). 요컨대 이상은 복권이 갖는 도박적 성격 자체의 특징, 곧 그 흡인력과 매력이 개인이 속한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별 범주에 따라 일정하게 차별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김석준·강세현, 1996a: 27-34).

이 해석을 받아들이면서 다음에는 그러한 배경 변수들을 통제하고 나서도 제안된 가설들이 검증될런지의 여부를 따져보기로 한다.

2. 가설 1의 검증

복권도 우연에 의한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도박의 속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복권 구입 여부는 다른 도박에 대한 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설정한 가설 1은 “복권 구입 여부는 도박에 대한 허용적 태도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이다. 이에 대한 검증은 복권 구입 여부를 ‘있다’, ‘없다’의 두 범주로 나눈 후 범주별로 도박 허용도의 평균을 인구 및 사회경제적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비교하는 절차를 밟았다.

연령, 성, 결혼 상태를 통제한 상태에서의 복권 구입 여부와 도박 허용도의 관계는 <표 3>이 보여 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복권을 구입한 적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도박 허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예외적으로 결혼 상태 변수의 ‘이혼·별거’의 하위 범주에서는 복권 구입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도박 허용도가 더 낮다. 그러나 복권 구입 여부와 결혼 상태의 상호작용 효과($F=1.73$, $p=.18$)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사회경제적 변수를 통제했을 때의 복권 구입 여부와 도박 허용도의 관계는 <표 4>에 제시했다. 이에 의하면, 학력, 종교, 직업, 본인의 월수입, 주관적 계층을 통제한 경우에도 복권 구입 여부는 도박 허용도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내용을 보면 거의 모든

(표 3) 복권 구입 여부와 도박 허용도: 인구적 특성 통제

구 분		복 권 구 입 여 부		
		없다	있다	F
연령	20대	10.72(138)	11.30(87)	7.21**
	30대	9.18(96)	9.98(84)	
	40대	7.81(75)	9.39(33)	
	50대이상	8.01(165)	8.06(33)	
	전체	9.00(474)	10.11(237)	
성	남자	9.93(198)	10.56(146)	9.45**
	여자	8.34(276)	9.40(91)	
	전체	9.00(474)	10.11(237)	
결혼상태	미혼	10.93(135)	11.37(86)	11.81**
	기혼	8.35(293)	9.57(140)	
	이혼·별거	7.54(46)	7.18(11)	
	전체	9.00(474)	10.11(237)	

** p < .01

※ 각 점수는 도박 허용도의 평균 값(사례수)임.

하위 범주에서 복권을 구입한 적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도박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더 많이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외적인 사례는 직업 변수의 ‘사무직’ 및 ‘농어민’ 하위 범주로서 전반적인 양상과는 다른 모습을 드러내는 듯하나 복권 구입 여부와 직업 변수의 상호작용 효과($F = 1.05$, $p = .40$)는 통계적으로 의미없다.

따라서 가설 1은 경험적으로 검증됐다 할 수 있겠고, 복권을 구입한다는 사실이 도박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의 하나를 얻은 셈이 된다.

〈표 4〉 복권 구입 여부와 도박 허용도 : 사회경제적 특성 통제

구 분		복권 구입 여부		
		없다	있다	F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7.66(181)	7.92(36)	5.00*
	고등학교 중퇴·졸업	9.56(149)	10.54(92)	
	전문대 및 초대 중퇴 이상	9.73(86)	10.20(76)	
전 체		8.77(416)	9.95(204)	
종교	종교 없음	9.93(179)	11.00(104)	15.30***
	불교	8.57(198)	9.35(86)	
	기독교	8.26(61)	9.08(25)	
	천주교	7.97(31)	10.33(21)	
	전 체	9.01(469)	10.14(236)	
직업	전문·관리직	8.90(21)	9.00(16)	9.95**
	사무직	10.50(24)	10.30(27)	
	판매·서비스·생산·기능직(자영)	8.32(138)	9.63(73)	
	판매·서비스·생산·기능직(파용)	10.79(48)	11.00(29)	
	단순노동·수위·행상 등	7.75(12)	10.86(7)	
	농어민	8.54(68)	8.29(14)	
	학생·군인·무직	10.51(77)	11.44(48)	
	주부	7.96(83)	9.22(23)	
	전 체	9.02(471)	10.11(237)	
월수입 (본인)	수입 없음	9.38(139)	10.79(63)	16.72***
	30만원 미만~89만원	8.49(158)	10.05(61)	
	90만원 ~ 199만원	9.19(115)	9.87(69)	
	200만원 이상	9.31(59)	9.78(41)	
	전 체	9.03(471)	10.15(234)	
주관적 계층	하층	8.03(70)	9.88(34)	17.32***
	중층	9.33(262)	10.07(126)	
	중상층	8.93(139)	10.36(76)	
	전 체	9.02(471)	10.14(236)	

* p < .05 ** p < .01 *** p < .001

※ 각 점수는 도박 허용도의 평균값(사례수)임.

3. 가설 2-1 및 2-2의 검증

복권 구입자들은 다른 형태의 도박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을 것인가? 또 복권 구입 경험은 개인과 사회에 바람직 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 도박으로 진전될 성향과 어떠한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러한 의문을 풀기 위해 가설 2-1은 “복권 구입 경험이 많을수록 다른 종류의 도박에 참여하는 정도도 높아질 것이다”로, 가설 2-2는 “복권 구입 경험이 많을수록 문제 도박 성향도 강화될 것이다”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여기서 다른 종류의 도박 참여 정도는 일반인들이 흔히 이용하고 있는 화투, 카드, 웃놀이의 세 종류의 돈내기 놀이, 곧 도박에 참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표 5〉 복권 구입 경험과 다른 종류의 도박 참여도: 인구적 특성 통제

구 분		복권 구입 경험				
		전혀 없다	별로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F
연령	20대	4.14 (74)	5.81 (64)	6.06 (71)	7.13 (16)	28.12***
	30대	4.53 (58)	5.32 (38)	5.71 (66)	6.61 (18)	
	40대	4.16 (57)	5.42 (19)	5.72 (29)	6.75 (4)	
	50대 이상	3.74(145)	4.80 (20)	4.44 (25)	5.50 (8)	
	전 체	4.04(334)	5.48(141)	5.68(191)	6.61 (46)	
성	남자	4.71(112)	6.25 (87)	6.53(111)	7.23 (35)	23.92***
	여자	3.70(222)	4.24 (54)	4.49 (80)	4.64 (11)	
	전 체	4.04(334)	5.48(141)	5.68(191)	6.61 (46)	
결혼 상태	미혼	4.18 (74)	5.93 (61)	5.99 (68)	7.22 (18)	34.85***
	기혼	4.05(216)	5.19 (78)	5.61(113)	6.11 (27)	
	이혼·별거	3.75 (44)	3.00 (2)	4.30 (10)	9.00 (1)	
	전 체	4.04(334)	5.48(141)	5.68(191)	6.61 (46)	

*** p < .001

※ 각 점수는 다른 종류의 도박 참여도의 평균값(사례수)임.

(표 6) 복권 구입 경험과 다른 종류의 도박 참여도: 사회경제적 특성 통제

구 분		복권 구입 경험					F
		전혀 없다	별로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3.83(162)	4.37 (19)	4.63 (30)	7.00 (6)		21.32***
	고등학교 중퇴·졸업	4.36 (90)	5.95 (59)	5.55 (77)	6.87 (15)		
	전문대 및 초대 중퇴 이상	4.57 (51)	5.31 (36)	6.43 (58)	6.38 (18)		
전 체		4.11(303)	5.48(114)	5.69(165)	6.64 (39)		
종교	종교 없음	4.28(119)	5.44 (61)	6.10 (87)	6.76 (17)		41.00***
	불교	4.05(153)	5.89 (45)	5.59 (70)	5.63 (16)		
	기독교	3.53 (38)	5.35 (23)	4.72 (18)	6.71 (7)		
	천주교	3.55 (20)	4.18 (11)	4.93 (15)	8.67 (6)		
	전 체	4.04(330)	5.47(140)	5.69(190)	6.61 (46)		
직업	전문·관리직	4.58 (12)	5.10 (10)	6.67 (15)	4.00 (1)		33.36***
	사무직	5.00 (17)	6.14 (7)	6.05 (21)	5.17 (6)		
	판매·서비스직 등(자영)	3.94(105)	5.64 (33)	5.27 (51)	6.55(22)		
	판매·서비스직 등(파용)	4.96 (27)	5.71 (21)	6.20 (25)	8.25 (4)		
	단순노동·수워·행상 등	3.50 (8)	5.00 (4)	5.83 (6)	9.00 (1)		
	농어민	3.97 (58)	6.00 (10)	4.92 (13)	7.00 (1)		
	학생·군인·무직	3.50 (40)	5.62 (37)	6.23 (39)	7.11 (9)		
	주부	3.89 (65)	4.22 (18)	4.33 (21)	6.00 (2)		
전 체		4.03(332)	5.46(140)	5.68(191)	6.61(46)		
월수입 (본인)	수입 없음	3.87 (85)	5.20 (54)	5.70 (53)	7.00 (10)		37.02***
	30만원 미만~89만원	3.89(129)	5.38 (29)	4.92 (50)	6.82 (11)		
	90만원~199만원	4.29 (83)	5.56 (32)	5.95 (60)	6.56 (9)		
	200만원 이상	4.43 (35)	6.20 (25)	6.46 (26)	6.47 (15)		
	전 체	4.04(332)	5.50(140)	5.68(189)	6.69 (45)		
주관적 계층	하층	3.86 (63)	5.29 (7)	5.23 (31)	7.00 (3)		39.46***
	중층	4.03(166)	5.68 (96)	5.70(101)	6.64 (25)		
	중상층	4.17(103)	5.00 (37)	5.86 (59)	6.71 (17)		
	전 체	4.04(332)	5.48(140)	5.68(191)	6.69 (45)		

*** p < .001

※ 각 점수는 다른 종류의 도박 참여도의 평균값(사례수)임.

인구적 특성을 통제한 경우 복권 구입 경험이 다른 종류의 도박 참여 정도에 미치는 영향은 〈표 5〉에서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연령의 '50대 이상' 하위 범주와 결혼상태의 '이혼·별거'의 하위 범주를 제외한 인구적 특성 변수의 모든 범주에서 일관되게 복권 구입 경험이 많을수록 다른 종류의 도박에 참여하는 정도도 높아진다(복권 구입 경험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 $F=7.80 p=.64$; 복권 구입 경험과 결혼상태의 상호작용 효과: $F=1.46 p=.19$). 그런데 한가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여자보다는 남자가 복권 구입 경험의 모든 범주에서 높은 도박 참여도를 보인다는 점이다(복권 구입 경험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 $F=4.30 p<.005$). 이는 성별의 차이가 복권 구입 경험은 물론 다른 종류의 도박 참여 정도에도 중요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변수임을 시사해 준다.

〈표 6〉은 사회경제적 특성을 통제한 후 복권 구입 경험과 다른 종류의 도박 참여도 사이의 관계를 들여다 보기 위한 것이다. 이 표를 보면 위 〈표 5〉와 유사하게 소수의 몇몇 하위 범주를 예외로 한 사회경제적 특성 변수의 모든 범주에서 복권 구입 경험이 많아질수록 다른 종류의 도박 참여 정도가 높아지고 있다. 복권 구입을 자주 한다는 범주보다 그렇지 않은 범주에서 다른 종류의 도박 참여도가 높은 사례는 학력의 전문대 및 초대 중퇴 이상, 종교의 불교, 직업의 전문·관리직과 사무직의 네 하위 범주에 불과하다. 따라서 학력, 종교, 직업, 본인의 월수입, 주관적 계층 등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통제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복권 구입 경험이 많을수록 다른 종류의 도박 참여 정도도 높아진다고 판단내릴 수 있다.

요컨대 복권 구입 경험은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 변수를 통제했을 때에도 다른 종류의 도박 참여도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밝혀짐으로써 가설 2-1도 경험적으로 입증된 것이다.

다음으로 가설 2-2에서 설정한 복권 구입 경험과 문제 도박 성향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표 7) 복권 구입 경험과 문제 도박 성향: 인구적 특성 통제

구 분		복권 구입 경험				
		전혀 없다	별로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F
연령	20대	.08 (73)	.37 (63)	.41 (71)	.80 (15)	9.81***
	30대	.07 (57)	.24 (37)	.42 (64)	.67 (18)	
	40대	.02 (55)	.05 (19)	.36 (28)	.75 (4)	
	50대 이상	.02(145)	.10 (20)	.40 (25)	.00 (8)	
	전 체	.04(330)	.25(139)	.40(188)	.60 (45)	
성	남자	.05(109)	.38 (85)	.67(109)	.74 (34)	8.13***
	여자	.04(221)	.06 (54)	.04 (79)	.18 (11)	
	전 체	.04(330)	.25(139)	.40(188)	.60 (45)	
결혼 상태	미혼	.08 (73)	.38 (60)	.37 (68)	1.06(17)	11.41***
	기혼	.03(213)	.16 (77)	.45(110)	.33 (27)	
	이혼·별거	.02 (44)	.00 (2)	.10 (10)	.00 (1)	
	전 체	.04(330)	.25(139)	.40(188)	.60 (45)	

*** p<.001

※ 각 점수는 문제 도박 성향의 평균값(사례수)임.

(표 7)의 인구적 특성을 통제한 경우, 몇 가지 예외적인 하위 범주들이 발견되고 있기는 하나 여기서도 전체의 추세는 복권 구입 경험이 많을수록 문제 도박 성향도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인구적 특성 변수 중 성별의 차이는 복권 구입 경험과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문제 도박 성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상호작용 효과: $F = 6.97$, $p < .000$). 표에서 보듯이 여자는 복권 구입 경험의 모든 범주에서 남자보다는 문제 도박 성향이 낮으며, 여자에 비해 남자의 경우에는 복권을 구입한 적이 전혀 없는 범주와 자주 구입하는 범주 간의 문제 도박 성향이 큰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표 8) 복권 구입 경험과 문제 도박 성향: 사회경제적 특성 통제

구 분		복권 구입 경험				
		전혀 없다	별로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F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04(162)	.05 (19)	.20 (30)	.50 (6)	8.83***
	고등학교 중퇴·졸업	.08 (88)	.32 (59)	.49 (75)	.60 (15)	
	전문대 및 초대 중퇴 이상	.00 (49)	.24 (34)	.42 (57)	.67 (18)	
전 체		0.4(299)	.25(112)	.41(162)	.62 (39)	
종교	종교 없음	.09(117)	.33 (61)	.42 (86)	.81 (16)	12.93***
	불교	.03(152)	.30 (43)	.53 (68)	.31 (16)	
	기독교	.00 (38)	.09 (23)	.06 (18)	.29 (7)	
	천주교	.00 (19)	.00 (11)	.20 (15)	1.17 (6)	
	전 체	.04(326)	.25(138)	.41(187)	.60 (45)	
직업	전문·관리직	.00 (11)	.00 (10)	.40 (15)	.00 (1)	11.00***
	사무직	.00 (16)	.00 (6)	.39 (18)	1.00 (6)	
	판매·서비스직 등(자영)	.01(104)	.31 (32)	.41 (51)	.55 (22)	
	판매·서비스직 등(파용)	.26 (27)	.38 (21)	.44 (25)	.00 (4)	
	단순노동·수워·행상 등	.00 (8)	.00 (4)	1.33 (6)	1.00 (1)	
	농어민	.00 (58)	.00 (10)	.54 (13)	1.00 (1)	
	학생·군인·무직	.05 (40)	.46 (37)	.38 (39)	.75 (8)	
	주부	.05 (64)	.00 (18)	.05 (21)	.50 (2)	
전 체		.04(328)	.25(138)	.40(188)	.60 (45)	
월수입 (본인)	수입 없음	.07 (84)	.31 (54)	.23 (53)	.67 (9)	11.15***
	30만원 미만~89만원	.04(129)	.11 (28)	.22 (50)	.64 (11)	
	90만원~199만원	.01 (81)	.13 (32)	.47 (57)	.78 (9)	
	200만원 이상	.06 (34)	.46 (24)	.85 (26)	.47 (15)	
	전 체	.04(328)	.25(138)	.39(186)	.61 (44)	
주관적 계층	하층	.05 (63)	.00 (7)	.26 (31)	.00 (3)	12.68***
	중층	.04(163)	.35 (94)	.38 (99)	.63 (24)	
	중상층	.04(102)	.05 (37)	.52 (58)	.71 (17)	
	전 체	.04(328)	.25(138)	.40(188)	.61 (44)	

*** p<.001

※ 각 점수는 문제 도박 성향의 평균값(사례수)임.

다음의〈표 8〉은 사회경제적 특성 변수를 통제했을 때의 복권 구입 경험과 문제 도박 성향의 관계를 보여준다. 앞의〈표 7〉과 마찬가지로 사회경제적 특성 변수들의 구체적 하위 범주에 있어서는 일반적 양상과는 다른 비일관적인 현상들도 간혹 보이지만, 복권 구입 경험과 사회경제적 특성 변수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의미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복권 구입 경험이 많을수록 문제 도박 성향 역시 강화된다는 사실을 뚜렷이 알 수 있다. 말하자면 구체적인 면에서는 미미한 진폭이 있지만 전반적이고 중심적인 흐름은 복권 구입 경험이 문제 도박 성향을 높이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게 해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복권 구입 경험이 많을수록 문제 도박 성향도 강화될 것이다”라는 가설 2-2 또한 경험적으로 검증됐다 해야 할 것이다.

V. 결론: 도박 합법화의 제주지역에 대한 함의

이상에서 우리는 복권을 중심으로 합법적 도박이 어떤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따져보았다. 앞에서 검토한 도박의 정의나 복권의 도박적 성격, 도박 합법화의 논리와 한국 사회의 합법적 도박의 실제상, 도박 합법화를 둘러싼 논쟁 등은 모두 합법적 도박의 그러한 영향을 판단할 세 가지 가설의 도출에 요구되는 작업이었다. 결론적으로 그 세 개의 가설이 모두 검증됐고, 따라서 합법적 도박은 그러한 명제에 나타난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정내릴 수 있게 됐다. 그 판정이란 요컨대 합법적 도박의 도입과 확대는 일반인들의 도박에 대한 태도를 관용적으로 변모시키는 동시에 불법적이든 합법적이든 다른 도박에 대한 참여율도 높여놓고, 김석준·강세현(1996b)이 제안한 대로 도박의 일상화를 초래하면서 사람들의 문제 도박 성향을 또한 강화시켜 그로 인한 각종의 사회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에는 당연히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뒤따르게 된다. 우

선 그러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법적 도박은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이어지거나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인가? 과연 도박의 합법화는 우리 사회에 그러한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만큼의 또는 그 이상의 어떤 긍정적인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도박 합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이들의 의도와 행위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또 어떠해야 할 것인가?

하지만 아직 이 글에서 얻어진 결과만으로는 이러한 질문 모두에 대한 명쾌한 답을 하기가 어렵다. 다만 합법적 도박의 사회적 영향이 부정적일 개연성이 매우 높으며, 이에 대한 집중적 관심과 토론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할 따름이다. 따라서 이 글에 대해서는 그런 질문과 의문들을 제대로 해명해나가기 위한 작업의 실마리라는 의의 부여에 족하고자 하거니와, 이제 우리 사회의 도박 문제에 대한 학술적·정책적·시민적 관심의 촉구와 꾸준한 연구는 아무리 강조한다 하더라도 지나치지 않으리라 본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라도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그러한 합법적 도박이 하필이면 왜 이 제주지역에서 그처럼 발달해야 하는가라는 의문과 마주하게 된다. 이 글의 두 선행연구(김석준·강세현, 1996a; 1996b)에서 이미 밝혀졌듯이 제주지역 주민들의 도박 참여율은 전국적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도박 범죄의 발생율 역시 전국 상위에 속한다. 이런 사정임에도 이 글의 논의과정에서 지적된 것과 같이 제주지역은 국내의 어떤 지역보다도 합법적 도박 사업이 왕성하고 앞으로도 더욱 확장될 조짐이 분명하다. 제주도가 벌써부터 한국의 도박장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이것이 제주지역의 현재 모습이자 지역개발의 또 다른 어두운 부분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므로 지금은 과연 이런 방향의 개발, 더 정확히는 그런 개발을 위한 도박 합법화에 대해 보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해보아야 하며, 그를 설명·이해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진지하고 깊이있는 연구와 토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청된다 해야 할 것이다. 구태여 덧붙이자면, 아마도 여

기에는 김석준·강세현(1996b)이 제주지역 도박 문제를 경감시키고자 제안한 대안들을 다시금 상기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단 이 글은, 위에 던진 의문들을 이후의 연구과제로 재차 부담하고자 하면서, 미국의 ‘합법적 도박을 반대하는 전국 연맹(NCALG: National Coalition Against Legalized Gambling)’의 홈페이지에 실린 저명한 도박 연구자인 Robert Goodman의 경고를 재인용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한번 도박을 합법화하고 나면 (주)정부는 그로부터 얻게 되는 재정수입에 더욱 더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특정 주에서의 도박의 미래 형태나 확산은 극히 통제하기 어려워지게 마련이다(NCALG, 1996)”.

참 고 문 헌

고택운

1994 “카지노사업의 환경분석 및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평가의 연구,” 제주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논문.

김석준·강세현

1996a 『도박의 실태와 의식에 관한 연구: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b “제주지역의 도박 실태와 도박 참여자의 사회적 성격: 문
제와 대안,” 제주대 지역사회발전연구소, 『사회발전연구』,
12: 553-79.

김종순

1995 “제주도 관광복권 발행,” 제주도, 『제주도』 98: 110-5.

김종철

1986 “종속과 독재와 저항 : 1965-72년의 정치 전개과정,” 박현

채·한상진 외, 『해방 40년의 재인식II』, 돌베개: 59–86.

김택환

1995 “도박공화국의 직장인들,” 『말』, 103:230–4.

박현채

1985 “한국자본주의의 전개과정,” 송건호·박현채 외, 『해방 40년의 재인식I』, 돌베개: 39–61.

이재상

1989 『형법신강(각론II)』, 박영사.

임영일

1985 “사회변동과 계급구조의 변화,” 송건호·박현채 외, 『해방 40년의 재인식I』, 돌베개: 63–80.

정영석

1987 『형법각론』, 법문사.

조선일보사

1995 “전운 감도는 복권시장,” 『주간조선』, 6월 22일자: 72–3.

한겨레신문사

1994 “사설도박장에 셀러리맨이 몰린다,” 『한겨레 21』, 11: 50–6.

1995 “복권 공화국! 정부만 횡재한다,” 『한겨레 21』, 80: 50–5.

한국 마사회

1995 『1994 마사연감』.

한상진

1989 “도시빈민의 주택문제,” 한국사회사연구회, 『현대 한국의 자본 축적과 민중 생활』, 한국사회사연구회 논문집 16집, 문학과 지성사: 243–349.

동아일보

1995. 1. 11일자 기사.

1996. 3. 16일자 기사.

1996. 4. 26일자 기사.

스포츠조선

90·濟州島研究 13輯

1996. 4. 29일자 기사.
- 제민일보
1996. 7. 24일자 기사.
- 제주도정
1996. 6. 15일자 기사.
- 제주신문
1996. 7. 17일자 기사
1996. 8. 13일자 기사.
- 한겨례신문
1995. 1. 22일자 기사.
1995. 10. 17일자 기사.
1996. 8. 31일자 기사.
- 한국경제신문
1996. 6. 2일자 기사.
- 한국일보
1992. 10. 1.~ 10. 10일자 기사, “도박병 <1> ~ <9>”.
- Abott, Douglas A., Sheran L. Cramer, and Steven D. Sherrets
1995 “Pathological Gambling and the Family: Practice
Implication,” *Families in Society*, 76(4): 213~17.
- Anderson, Kerby
1991 “Gambling,” *Probe*, (<http://199.227.115.30/probe/gambling.htm>).
- Blakey, G. Robert
1979 “State Conducted Lotteries: History, Problems, and
Promises,” *The Journal of Social Issues*, 35(3): 62~86.
- Brinner, Roger E., and Charles T. Clotfelter
1975 “An Economic Appraisal of State Lotteries,” *National
Tax Journal*, 28: 395~404.
- Borg, Mary O., Paul M. Mason, and Stephen L. Shapiro
1991 “An Incidence of Taxes on Casino Gambling: Exploiting

- the Tired and Poor,"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50(3): 323–32.
- Caillois, Roger
1994 「놀이와 인간」 이상률 역, 서울: 문예출판사.
- Cline, Roger S.
1995 "U.S. Gaming: An Economic Force," *Investor Survey*, (<http://www.hotel-online.com/anderson/us-gaming.html>).
- Devereux, Edward C. Jr.
1974 "Gambling," in Sills, David L. (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 Crowell Collier and Macmillan.
- Dielman, T. E.
1979 "Gambling: A Social Problem?" *The Journal of Social Issues*, 35(3): 36–42.
- Dombrink, John Dennis
1981 "Outlaw Businessmen: Organized Crime and the Legalization of Casino Gambling,"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Ginsberg, F., et al.
1976 "Risk-Taking in the Presence of Others: Blackjack in the Laboratory and in the Field," in Eadington, W. R. (ed.) *Gambling and Society*, Springfield, Ill: Charles C. Thomas, Publishers.
- Goffman, Erving
1967 "Where the Action Is," in *Interaction in Ritual*, Garden City, New York: Anchor Books.
- Goodman, Robert
1995 "The National Impact of Casino Gambling Proliferation," Hearing before the Committee on Small Business, House

- of Representatives, 103rd Congress, 2nd Session.
Washington D.C., September 21, 1994.
- Hagan, John
1988 *Structural Criminology*, Cambridge: Polity Press.
- Herman, Robert D.
1967 "Gambling as Work: A Sociological Study of the Race Track," in Herman(ed.) *Gambling*, New York: Harper and Row.
- Hybels, Judith H.
1979 "The Impact of Legalization on Illegal Gambling Participation," *The Journal of Social Issues*, 35(3): 27 – 35.
- Kallick-Kaufman, Maureen and Peter Reuter
1979 "Gambling in the U.S.: Public Finance or Public Problem?: Introduction," *The Journal of Social Issues*, 35 (3):1–6.
- Knowles, Eric S.
1976 "Demand for Stimulation and Probability Preferences in Gambling Decision," *Polish Psychological Bulletin*, 8.
- Lorenz, Valerie C., Robert M. Politzer, and Robert A. Yaffee
1990 *Final Report of the Maryland Task Force on Gambling Addiction.* (<http://www.nyu.edu/acf/socsci/task-force-contents.html>)
- Lowenkopf, Eugene L.
1991 "Gambling," in Klebanow, Sheila, and Eugene L. Lowenkopf (eds.) *Money and Mind*, New York: Plenum Press: 85 – 98.
- Mikesell, John L., and C. Kurt Zorn
1986 "State Lotteries as Fiscal Savior or Fiscal Fraud: A Look at the Evidenc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 44: 311–20.
- Mikesell, John L., and Maureen A. Pirog-Good
1990 “State Lotteries and Crime: The Regressive Revenue Producer is Linked with a Crime Rate Higher by 3 Percent,”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49(1): 7–19.
- NCALG(National Coalition Against Legalized Gambling)
1996 Home Page on the Internet. (<http://www.iquest.net/cpage/ncalg/>).
- Newman, Otto
1977 *Gambling: Hazard and Reward*, London: The Athlone Press of the University of London.
- Pizam, Abraham, and Julianne Pokela
1985 “The Perceived Impacts of Casino Gambling on a Community,” *Annals of Tourism Research*, 12: 147–65.
- Schur, Edwin M.
1969 *Our Criminal Society: The Social and Legal Sources of Crim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 Simon, Paul
1995 “The Explosive Growth of Gambling in the United States,” From the U.S. Congressional Record for the 104th Congress. (http://www.iquest.net/cpage/ncalg/the_expl.htm)
- Suits, Daniel B.
1979 “Economic Background for Gambling Policy,” *The Journal of Social Issues*, 35(3) : 43–61.
- Volberg, R. A.
1994 “The Prevalence and Demographics of Pathological Gamblers: Implications for Public Health,”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4(2): 237–41.

Zola, Irving Kenneth

1963 "Observations on Gambling in a Lower Class Setting,"
Social Problems, 10.

Business World Online Edition.

1995. 11. 16일자. (<http://bizworld.globe.com.ph/oe111695/TheNation/nationbriefs.html>)

The Press of Atlantic City.

1995. 11. 2일자. (http://www.acy.digex.net/~acpress/11_02gmb.html).

The Social Impact of Legalized Gambling: Evidences from the Bettors on Lotteries in Cheju

Kim, Suk-Joon
Kang, Sei-Hyon

Department of Sociology, Cheju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o identify the social impact of legalized gambling evidenced from the bettors on lotteries in Cheju. We discuss first the issues on the definition of gambling, the characteristics of lottery as a gambling, the argument on the gambling legalization, and the facts of legalized gambling in Korea.

And then, the following hypotheses derived from the discussions are tested.

(1) A permissive attitude toward gambling will be affected by the experience in betting on lotteries. (2) The more people bet on lotteries, the more they will participate in other gambling activities. (3) The more people bet on lotteries, the more they will have the problem—gambling orientation.

The data were obtained from a sample survey conducted in May, 1995, with a structured questionnaire. The sample were composed of 712 Cheju residents over 20 years old.

In conclusion, three hypotheses are corroborated. The results show that the introduction and extension of legalized gambling lead people to a permissive attitude toward gambling more and more, and to participation in other gambling more often. And the increase in access to legal or illegal gambling results in an increase in the problem—gambling orientation and other social problems related to gambling.